

『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제정되어 있는 수강료 관련 조항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, 수강료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강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징수(안 제3조)
- 규칙에 있는 수강료 징수, 면제 및 반환사유를 조례로 변경하고 면제대상자를 확대(안 제3조의2, 안 제3조의3)
- 시설 사용료 면제사유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7조, 제139조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21조, 제22조의2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제정되어 있는 수강료 관련 조항 및 사용료 면제 조항을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, 수강료를 수강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1강좌에 5천원 징수하던 것을 주2시간 이하 5천원, 주3시간 이상은 1만원으로 변경하여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,
-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 수강료 납부 면제자의 범위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음.
- 또한 안 제9조에서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평생교육원의 수강료 징수, 면제 및 반환사유를 조례로 변경

하고, 수강생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 강좌 시간에 따른 수강료를 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